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13
------	---------

제출연월일	2003. 3.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개정이유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함 (안 제8조)
  - 3분의1 이상 ⇒ 100분의 30이상
-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함 (안 제13조)
  - 20명 초과 1인당 30만원 ⇒ 20명 이상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 2억원 한도 삭제
-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 규모 축소 (안 제14조)
  - 50명 이상 ⇒ 20인 이상
- 시설보조금 연차별 투자 계획의 경우 투자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안 제15조)
-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 ■ 개정근거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개정계획 (지경 55145~ , 2003. 3)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분의 1”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기업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중 “차액 보조금은”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으로 하고,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50명”을 “20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b>3분의 1</b>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① ……………</p> <p>……………</p> <p>…………… <b>100분의 30</b> …</p> <p>……………</p> <p>………</p> <p>② <u>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기업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2조 (입지보조금)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b>차액 보조금은</b>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b>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b></p> <p>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u></p>	<p>제12조(입지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b>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b> …</p> <p>……………</p> <p>……………</p> <p>……………</p> <p>……………</p> <p>……………</p> <p>…………… <u>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3조 (고용보조금)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 (고용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 ①(현행과 같음)</p> <p>② ..... 20인 ...</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설보조금)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시설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 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3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li> <li>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li> <li>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li> <li>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li> <li>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li> <li>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li> <li>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p>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14
----------	---------

제출일자	2003. 3
제안자	거창군수

## ■ 개정사유

- 수승대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13필지, 100,098㎡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13건)이 관광객에게 개방 이용되고 있어 현재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조하고 있으나,
-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함.

## ■ 주요골자

- 관람료 수입금액 중 100 분의 20 이하 보조금 ⇒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

## ■ 개정근거

-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제②항 군수는 관광지구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수입금의 사용)</p> <p>① (생략)</p> <p>② <u>군수는 매년 관광지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관광 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2조(수입금의 사용)</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관광지구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2003. 4. 12.  
第98回 臨時會 第1次 會議

# 條 例 檢 討 報 告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產 業 建 設 委 員 會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4.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4. 10.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3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및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함 (안 제8조)
  - 3분의 1이상 ⇒ 100분의 30이상
- 입지보조금 (안 제12조)
  - 분양가의 차액 일부보조 ⇒ 정상 분양가의 50%초과 불가, 제조업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지원 불가
-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함 (안 제13조)
  - 20명 초과 1인당 30만원 ⇒ 20명 이상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 2억원 한도 삭제

○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14조)

- 내국인 신규고용 50명 이상 ⇒ 20인 이상

○ 시설 보조금 연차별 투자 계획의 경우 투자기간을 공장사업개시  
일, 공장증설된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안 제15조)

○ 보조금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 3. 검토의견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의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군에서는 조례로 정한 특별한 이  
유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그에 따른 군비 지원액 등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합니다.

○ 국내기업 투자유치 전망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군비 추가 부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0. 11. 15 조례 제1599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칙으로 명시해  
놓고 있었던 사항이나,

이번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과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참 고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개정계획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4.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4. 10.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4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수승대 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13필지, 100,098m<sup>2</sup>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13건)이 관광객에게 개방 이용되고 있어 현재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이하로 보조하고 있으나,
-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 수입금액 중 100분의 20 이하 보조금 ⇒ 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

### 3. 검토의견

- 현행 관광지내 위치해 있는 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군수가 매년 행사시 관광지 내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야외극장 무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시설물 보존관리 경비 명목으로 수입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보조금 ⇒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즉, 임차료) 지급으로 개정
- 개정 조례안에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 외 임차계약에 의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중점검토내용

첫째, 용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동 조례 제1조에서 “수승대관광지”를 “관광지”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관광지구 ⇒ 관광지로 통일해야 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료” ⇒ “임차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사용료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의 재산 및 영조물을 이용하는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공과금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불하는 돈

둘째, 현행 조례와 같이 개정안에도 단서조항으로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창신씨 요수종중 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소유자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문화재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 징수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봅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시·도지정문화재에도 준용, 제58조)

○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셋째, 조례를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사용료” 지급으로 개정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단서에서는 보조금을 줄 경우 임차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임차료와 행정기관에서 사무와 사업을 위한 것과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교부금 성격의 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 보조금의 정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

## 4. 참 고

- 관광진흥법 제 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